

#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일반대학원 학사운영에 관한 내규

제정일: 1999년 3월 1일

최종개정일: 2017년 11월 1일

제 1 조(목적과 적용범위) 이 내규는 대학원 학칙에 의거하여 행정학과 일반대학원의 원활한 학사운영을 목적으로 하며, 본 대학원 과정에 등록되어 있는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제 2 조(석사학위과정 학생의 학점이수)

- ① 석사학위 과정의 학생은 필수과목을 포함하여, 총 33학점 이상 이수해야 한다. 단, 타 학과 및 타 대학에서 개설되는 과목은 최대 6학점까지만 인정한다.
- ② 석사학위 과정의 학생 중 대학에서 행정학을 전공하지 않은 학생(이하 비전공자)은 선수과목으로 본 학부에서 개설하는 행정학 전공과목을 3학점 이상 이수해야 한다. 단, 선수과목은 대학원 졸업학점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 ③ 비전공자가 학부에서 행정학 전공과목을 이수한 경우 대학원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최대 3학점까지 선수과목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 ④ 타 대학원 석사학위 과정을 이수한 석사과정 신입생의 경우 대학원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타 대학원 이수과목의 최대 6학점까지 본 대학원 이수과목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 ⑤ 본 조항의 적용은 부칙 ②항을 따르며, 그 이외는 2012년 3월 1일자 내규를 따른다.

제 3 조(박사학위과정 학생의 학점이수)

- ① 박사학위 과정의 학생은 총 33학점 이상 이수해야 한다.
- ② 박사학위 과정의 학생은 타 학과 및 학점교류협정을 맺은 타 대학에서 개설되는 과목을 수강할 수 있으나 최대 9학점까지만 인정한다.
- ③ 박사학위 과정의 학생은 독립연구 과목(2학점)을 수강할 수 있으며 최대 4학점까지 인정한다. 단, 동일 학기에 두 개의 독립연구 과목을 동시에 수강하는 것은 불가한 것으로 한다.
- ④ 박사학위 과정의 학생 중 해당전공의 우수경력이 인정되는 학생은 대학원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이수학점 중 3학점을 면제받을 수 있다.

제 4 조(종합시험 응시자격)

- ① 석사학위 과정 : 정규등록 또는 연구등록이 되어 있는 학생으로서 석사학위과정을 3학기 이상 이수하고 27학점 이상 취득한 자로서 외국어 시험에 합격한 자.
- ② 박사학위 과정 : 정규등록 또는 연구등록이 되어 있는 학생으로서 박사학위과정을 4학기

이상 이수하고 박사학위과정에서 33학점 이상 취득하였으며, 박사학위과정 동안 주요 학회에 1회 이상 논문 게재 또는 발표한 자.

- ③ 종합시험 예외규정: 박사학위과정의 재학생인 경우, 그 재학기간을 고려하여 종합시험에 관해 예외사항을 둔다. 석사학위과정의 재학생인 경우, 대학원 종합시험 전까지 주요 학술대회에서 1회 이상 발표 또는 학술진흥재단 등재후보지 이상의 학술지에 1회 이상 논문 게재를 조건으로 종합시험을 1과목 면제받을 수 있다. 단, 종합시험 과목조정 및 면제는 대학원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한 후 최종 결정한다.

#### 제 5 조(종합시험 응시절차 및 승인)

- ① 종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학생은 학과에서 공지한 기일 내에 응시원서 및 성적증명서 각 1통을 대학원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 종합시험 응시자격을 검증받아야 한다.
- ② 종합시험 응시여부는 대학원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단, 대학원운영위원회의 개최가 어려운 경우 대학원 주임교수에게 결정을 위임한다.

#### 제 6 조(종합시험 일자 및 외국어시험 성적표 제출)

- ① 종합시험은 매년 여름방학과 겨울방학 중 대학원운영위원회가 정하는 일자에 실시한다.
- ② 외국어시험의 결과는 응시한 종합시험 결과를 대학원에 보고하기 이전까지 학과 사무실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 7 조(종합시험의 내용 및 시험위원)

- ① 석사학위 종합시험은 필답시험으로 하며, 박사학위 종합시험은 필답시험과 구술시험으로 한다.
- ② 학위과정별 종합시험 과목은 본 내규 제9조와 제10조에 의거하여 종합시험을 응시하는 학생이 선택한다. 단, 필수과목 및 집중강의는 시험과목에서 제외된다.
- ③ 석사학위 종합시험위원은 대학원 강의담당 교수 2인 이상으로 구성하며, 박사학위 종합시험위원은 대학원주임교수를 포함한 4인 이상으로 구성하며, 대학원주임교수가 전공이나 부전공 영역의 종합시험 위원이 될 경우에는 3인 이상으로 한다. 단, 박사학위 종합시험 시험위원의 경우에는 전체 종합시험위원의 절반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자격이 인정되는 외부인사의 참여가 가능하다.
- ④ 박사학위 구술시험의 위원은 필답시험 위원과 같다.
- ⑤ 본 조항의 적용은 부칙 ②항을 따른다.

#### 제 8 조(외국어시험의 내용 및 합격)

- ① 외국어 시험은 본 교에서 시행하는 기관토플과 국가공인 외국어 시험을 인정한다. 단, 주요 기관에서 개최하는 외국어 시험의 인정여부는 교수회의를 통해 결정한다.

- ② 본교 대학원의 외국어시험 시행 세칙 준수를 원칙으로 한다. 단, 영어 시험의 경우 본교의 기관 TOEFL을 기준으로 최저합격 점수는 석사 540점, 박사 570점이며 TOEIC을 기준으로 석사 750점, 박사 800점이다. 기타 외국어 시험(TEPS, IELTS, FLEX 등)은 이에 상응하는 점수를 제출해야 한다. 이에 관한 기준은 교수회의에서 결정한다.
- ③ 본교 외국어학당에서 개설한 대학원 외국어자격시험(영어) 대체 강좌를 이수한 원생에 한하여, 대학원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외국어시험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단, 이 경우에도 ②항의 기준 점수 혹은 그 이상의 점수를 목표로 하는 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 ④ 본 조항의 적용은 부칙 ⑳항을 따르며, 그 이외는 2012년 3월 1일자 내규를 따른다.

#### 제 9 조(석사학위 종합시험)

- ① 종합시험은 전공 영역과 연구 방법에 대한 기초 지식과 능력을 판정할 수 있는 문제를 출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각 교과목 담당교수에게 일임한다.
- ② 종합시험의 과목은 제1영역(행정이론 분야), 제2영역(정책이론 분야), 제3영역(응용 분야)의 총 3영역에서 2가지 영역을 선택하여 각 1과목씩 선택한다. 단, 종합시험 응시 학생은 선택한 영역 내에 최소한 2과목 이상을 수강하여야 한다.
- ③ 필수과목인 계량기법 I, 계량기법 II 및 연구설계세미나, 집중강의인 공공정책을 위한 GIS 및 공간 분석은 시험과목에서 제외된다.
- ④ 석사학위 종합시험 교과목의 영역 구분은 [별첨 1]과 같다.
- ⑤ 지도교수의 추천과 대학원주임교수의 승인이 있을 경우 종합시험과목영역의 변경을 인정한다.
- ⑥ 본 조항의 적용은 부칙 ⑳항을 따르며, 그 이외는 2012년 3월 1일자 내규를 따른다.

#### 제 10 조(박사학위 종합시험)

- ① 박사학위 종합시험은 전공 영역 전체의 전문적 연구 방법에 대한 넓고 깊은 이해를 시험한다. 다만, 개별 응시자의 전공 영역을 감안하여 타 학과의 과목으로 종합시험을 치를 수 있다. 단, 1과목만 인정한다.
- ② 박사학위 종합시험 과목은 1개의 전공영역에서 2과목, 2개의 부전공영역에서 각 1과목씩, 통합적 사례 분석 등 총 5과목을 종합시험 필답시험으로 치른다. 단, 각 영역 내에 개설된 과목 중 최소 2과목 이상을 수강하여야만 전공영역 및 부전공영역으로 선택할 수 있다. 통합적 사례분석 시험의 출제와 채점은 대학원주임교수가 담당한다.
- ③ 필수과목인 계량기법 I, 계량기법 II, 고급계량과 미래예측, 행정학교수지도법연습 및 연구설계세미나, 집중강의인 공공정책을 위한 GIS 및 공간 분석은 시험과목에서 제외된다.

- ④ 박사학위 종합시험 교과목의 영역 구분은 [별첨 2]와 같다.
- ⑤ 지도교수의 추천과 대학원주임교수의 승인이 있을 경우 종합시험과목영역의 변경을 인정한다.
- ⑥ 본 조항의 적용은 부칙 ⑳항을 따르며, 단 3항의 경우는 부칙 ㉑항을 따른다.

제 11 조(종합시험의 합격)

- ① 종합시험 필답시험의 경우,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을 받아야 개별과목의 합격으로 인정한다.
- ② 석사과정의 경우, 응시한 필답시험 전과목에서 70점 이상을 받아야 종합시험 합격으로 인정한다. 박사과정의 경우 응시한 필답시험 중 3과목 이상에서 70점 이상을 받아야 필답시험 합격으로 인정한다.
- ③ 박사과정의 구술시험의 경우, 시험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합격을 결정한다.
- ④ 종합시험 및 외국어시험의 합격은 본교 대학원장이 승인함으로써 최종 확정된다.

제 12 조(종합시험의 재시험)

- ① 필답시험에서 불합격한 경우, 당해학기 종합시험 결과 보고 이전에 1회에 한하여 해당 과목의 필답시험에 재응시할 수 있다. 단, 재응시의 경우 불합격한 과목의 응시를 원칙으로 한다.
- ② 당해학기 필답시험 재시험에 불합격한 경우, 종합시험 불합격으로 처리되며 1년 이내에 전과목 종합시험에 재응시해야 한다.
- ③ 박사과정생이 필답시험 합격 후 구술시험에 불합격한 경우, 1년 이내에 1회에 한하여 구술시험에 재응시해야 한다.
- ④ 필답시험 또는 구술시험 불합격 후 1년 이내에 재응시 하지 않거나, 재응시한 필답시험 또는 구술시험에서 다시 불합격한 경우는 본교 대학원 학칙에 의거하여 수료로 인정한다.

제 13 조(필수과목의 지정)

- ① 본 대학원 석사학위과정 재학생은 계량기법 I, 계량기법 II 중에서 1과목, 그리고 연구설계세미나, 공공관리론 등 총 3과목을 필수과목으로 이수해야 한다.
- ② 본 대학원 박사학위과정 재학생은 계량기법 I, 계량기법 II, 고급계량과 미래예측 중 2과목, 행정학교수지도법연습 및 연구설계세미나 등 총 4과목을 필수과목으로 이수해야 한다.
- ③ 본 대학원의 석사과정을 졸업하고 박사과정에 입학한 원생에 한하여, 석사과정에서 계량과목을 2과목 이상 수강한 경우 대학원주임교수의 승인을 거쳐 1과목을 면제 받을 수 있다. 단, 이 경우에도 본 내규의 제 3조 1항에 해당하는 학점을 이수하여야 한다.

- ④ 본 대학원의 석사과정을 졸업하고 박사과정에 입학한 원생에 한하여, 석사과정에서 연구설계세미나를 수강한 경우 대학원주임교수의 확인을 거쳐 해당 과목을 면제 받을 수 있다. 단, 이 경우에도 본 내규의 제 3조 1항에 해당하는 학점을 이수하여야 한다.
- ⑤ 본 대학원의 박사과정생에 한하여, 타 학과에서 개설된 유사 계량과목 수강을 희망하는 경우 사전에 지도교수 및 대학원주임교수의 승인을 거쳐 ②항의 필수 통계과목으로 대체 인정받을 수 있다. 단, 이 경우에도 본 내규의 제 3조 1항에 해당하는 학점을 이수하여야 한다.
- ⑥ 계량기법 II는 부칙 ㉓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⑦ 타 대학원 석사학위를 취득한 박사과정의 재학생은 대학원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이수과목을 본 대학원의 필수과목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단, 이 경우에도 본 내규의 제 3조 1항에 명시한 이수학점을 이수하여야 한다.
- ⑧ 본 조항의 적용은 부칙 ㉔항을 따르며, 그 이외는 2012년 3월 1일자 내규를 따른다.

제 14 조(논문 연구계획서 심사 신청자격)

- ① 석사학위 과정의 경우, 논문의 연구계획서를 심사받기 위해서는 3학기 이상 재학하고, 필수과목을 포함하여 27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그리고 종합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 ② 박사학위 과정의 경우, 연구계획서 심사를 받기 위해서는 4학기 이상 재학, 박사학위 과정에서 33학점 이상 취득하여야 한다. 그리고 필수과목을 반드시 수강하여야 하며, 종합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제 15 조(석사과정생의 학사지도와 학위논문의 심사)

- ① 석사과정생은 대학원운영위원회에 소정의 양식에 따른 학업활동보고서(progress report)를 매학기 제출해야 한다. 제출된 자료는 대학원운영위원회가 심사하여 해당 학생의 학사지도 자료로 활용한다.
- ② 석사과정생은 재학 세 번째 학기가 시작된 후 2주내에 지도교수를 정한다. 지도교수를 정하기 전까지는 대학원 주임이 임시 지도교수가 되어 대학원운영위원회와 함께 학사지도를 한다.
- ③ 석사학위논문을 준비 중인 석사과정생 중 본 내규 규정 적용시기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지도교수가 정해지지 않은 경우에는 논문학기 시작 2주 이내에 논문 지도교수를 선정해야 한다.
- ④ 석사학위논문 심사위원회는 논문 지도교수 1명과 부심 2명 등 총 3명으로 구성한다.
- ⑤ 석사학위논문은 심사위원 2인 이상이 100점 만점에서 80점 이상으로 평가할 경우에 합격으로 인정한다.

제 16 조(박사학위논문 연구계획서 준비 및 발표)

- ① 박사과정생은 대학원운영위원회에 소정의 양식에 따른 학업활동보고서(progress report)를 매학기 제출해야 한다. 제출된 자료는 대학원운영위원회가 심사하여 해당 학생의 학사지도 자료로 활용한다.
- ② 박사과정생은 재학 세 번째 학기가 시작된 후 2주내에 지도교수를 정한다. 지도교수를 정하기 전까지는 대학원 주임이 임시 지도교수가 되어 대학원운영위원회와 함께 학사지도를 한다.
- ③ 박사학위 연구계획서 발표를 준비 중인 박사과정생 중 본 내규의 적용시기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지도교수가 정해지지 않은 경우에는 연구계획서 발표학기 시작 2주 이내에 논문 지도교수를 선정해야 한다.
- ④ 박사학위논문 연구계획서의 발표는 학기 시작 2주 이내에 해야 한다. 2주 이내에 발표 하지 못할 경우, 다음 학기 시작 후 2주 이내에 발표한다.
- ⑤ 연구계획서의 심사와 승인은 연구계획서 심사위원회에서 담당한다. 연구계획서 심사위원회는 박사학위논문 주심 1명과 부심 2명, 그리고 대학원 주임교수로 4명으로 구성된다.
- ⑥ 박사학위논문 연구계획서의 통과는 주심 1명과 부심 2명이 모두 찬성하는 등 심사위원 3명 이상의 찬성으로 승인된다.

제 17 조(박사학위논문 작성과 심사)

- ① 박사학위논문 연구계획서가 통과된 자에 한해 학위논문을 작성할 수 있다.
- ② 박사학위논문 심사위원회는 주심 1명과 부심 4명으로 구성된다. 외부 심사위원은 타 대학 전임교원 이상의 자격을 가져야 하며 최대 2인까지 가능하다.
- ③ 박사학위논문을 작성하는 자는 최종심사 전에 학술진흥재단 등재후보지 이상의 학술지에 2회 이상 논문을 게재하고 이 중 최소한 1회는 주저자 자격으로 게재하여야 하며 주요학술회의에서 2회 이상 발표하여야 한다. 단, 박사학위과정 동안 게재된 논문과 발표만을 인정하며, 증빙자료를 학위논문 예비심사 이전에 행정학과 사무실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④ 본 조항의 적용은 부칙 20항을 따르며, 그 이외는 2012년 3월 1일자 내규를 따른다.

제 18 조(석사학위 심사논문의 제출)

- ① 학위논문 심사대상자는 학과에서 지정하는 기한인 예비심사 2주일 전에 심사받을 논문을 학과 사무실로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심사논문을 기한 내에 학과 사무실로 제출하지 못할 경우, 논문심사를 다음 학기로 연기한다. 단, 논문 주·부심과 대학원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 심사논문의 제출기한을 조정할 수 있다.
- ③ 대학원운영위원회는 제출한 논문을 검토하여 예심본으로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는 경고, 연기권고 중 하나를 결정하여 해당 논문을 제출한 원생의 지도교수에게 공지한다.

④ 본 조항의 적용은 부칙 ②항을 따른다.

제 19 조 (졸업요건 심의와 결정)

① 내규 관련 졸업예정자의 요건 심의의 결정은 운영위원회에 일임한다.

## 부 칙

- ① (시행일) 이 내규는 199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 (시행일) 이 내규의 개정사항(내규의 명칭, 제 4 조, 제13조~제14조)은 200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③ (시행일) 이 내규의 개정사항(내규의 명칭, 제 7 조 2항)은 2001년 1월 15일부터 시행한다.
- ④ (시행일) 이 내규의 개정사항(내규의 명칭, 제2조 나항 제7조 2항의 나·제8조 2항)은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⑤ (시행일) 이 내규의 개정사항(내규의 명칭, 제 17조)은 200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⑥ (시행일) 이 내규의 개정사항(내규의 명칭, 제 13조)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⑦ (시행일) 이 내규의 개정사항(내규의 명칭, 제 16조)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⑧ (적용대상) 이 내규의 개정사항(내규의 명칭, 제 1조 1의 나항, 제 8조의 나항)은 2007 3월 1일 박사과정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 ⑨ (적용대상) 이 내규의 개정사항(내규의 명칭, 제 3조와 제 8조의 나항)은 2007년 3월 1일 석사과정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 ⑩ (적용대상) 이 내규의 개정사항(내규의 명칭, 제 8조의 라항)은 2007년 9월 1일 박사과정 입학생부터 적용하며, 이전 입학생은 본인의 선택에 의해 적용할 수 있다. 이 때, 개정사항의 일부만을 선택적용할 수는 없다.
- ⑪ 이 내규의 개정사항(내규의 명칭, 제12조)에서 계량기법연습(혹은 계량기법 I)의 필수수강은 2007년 9월 1일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 ⑫ 이 내규의 개정사항(내규의 명칭, 제12조)에서 연구설계세미나 필수 수강은 2008년 3월 1일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 ⑬ 이 내규의 개정사항(내규의 명칭, 제18조)의 졸업 요건은 2008년 3월 1일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 ⑭ 이 내규의 개정사항 (내규의 명칭, 제 15조와 16조의 각 1항, 2항, 3항)의 석사과정생과 박사과정생의 학사지도와 지도교수 선택 등에 대한 내용은 2009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 ⑮ 이 내규의 개정사항 (제 3조의 5항, 18조의 1항)의 특수대학원 석사학위 취득학점 인정 및 예심 심사 논문 제출 기간 변경 등에 대한 내용은 2010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 ⑯ 이 내규의 개정사항 (제 2조의 3항, 4항, 3조의 6항, 7항, 11조, 12조)의 선수과목 면제, 타교, 타진공, 특수대학원 석사학위 취득자의 학점이수, 종합시험 합격, 재시험 등에 대한 내용은 2010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 ⑰ 이 내규의 개정사항(제 16조 5항, 제 19조)의 심사위원의 수 변경, 졸업요건 심의와 결정 등에 대한 내용은 2011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 ⑱ 이 내규의 개정사항(제 3조)의 박사학위과정 학생의 학점이수 등에 대한 내용은 2012년 3월 1일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⑲ 이 내규의 개정사항(제 16조의 6항)의 박사학위논문 연구계획서의 통과에 관한 내용은 2012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⑳ 이 내규의 개정사항(제 8조 2항, 9조 3항, 10조 3항, 13조 1항, 2항, 17조 3항)의 외국어시험의 내용 및 합격, 석사학위 종합시험, 박사학위 종합시험, 필수과목의 지정, 박사학위논문 작성과 심사에 관한 내용은 2015년 3월 1일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㉑ 이 내규의 개정사항(제 2조 2항, 3항)의 석사학위과정 학생의 학점이수에 관한 내용은 2015년 9월 1일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㉒ 이 내규의 개정사항(제 7조 3항, 제 10조 2항, 제 18조 1항)의 종합시험의 내용 및 시험위원, 박사학위 종합시험과목, 심사논문의 제출에 관한 내용은 2015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㉓ 계량분석 II는 ‘고급행정계량분석’으로 갈음할 수 있다.

[별첨 1]

제 9조 4항 (석사학위 종합시험의 교과목 영역 구분)

구분	학정번호	과목명
제 1 영역 (행정이론)	PUB7710	거버넌스 실증 연구세미나
	PUB7103	공공관리론
	PUB8703	관료제도론
	PUB8707	국가경영론
	PUB7730	국정관리와 대통령학
	PUB8709	비교발전행정론
	PUB8705	비교제도분석론
	PUB7820	비영리조직세미나
	PUB7003	신제도주의경제학(구:합리적선택과신제도주의)
	PUB6201	인사행정론
	PUB6301	재무행정론
	PUB7004	정부성과론
	PUB8322	정부예산론세미나
	PUB6004	제도주의 국가분석
	PUB7715	제도주의 조직분석
	PUB8111	조직론세미나
	PUB8142	조직실증연구
	PUB6101	조직이론
	PUB7101	조직행태론
	PUB7709	한국행정론
PUB7716	행정수단론	
PUB6103	행정이론	
PUB8101	행정학세미나	
제 2영역 (정책이론)	PUB7551	문화정책론
	PUB8104	비교산업정책론
	PUB7531	비교정책론
	PUB8326	재정분석론
	PUB7403	전자정부론
	PUB7713	정부규제론
	PUB7810	정책관리론
	PUB8502	정책문제세미나
	PUB8502	정책문제세미나
	PUB9102	정책문제해결연습
	PUB8504	정책분석평가론

	PUB8534	정책사례
	PUB8533	정책집행론
	PUB6509	정책형성론
	PUB6005	통상정책론
	PUB8102	혁신과 정책
	PUB8103	과학,기술,혁신과 정책
	PUB8559	환경정책론
	PUB8108	THE POLICIES OF YOUTH AND OLD AGE IN MODERN KOREA
제 3영역 (응용분야)	PUB7001	행정학방법론
	PUB8109	행정과 민주적책무성
	PUB8653	지방행정론 세미나
	PUB7606	지방행정론
	PUB8654	지방행정과 공동체
	PUB7301	지방재정론
	PUB7712	지방복지론
	PUB7705	정부와 기업
	PUB6006	정부와 국제금융위기
	PUB7401	정보체계론
	PUB7902	예술행정
	PUB6001	연구방법론
	PUB7711	복지행정론
	PUB6302	민관협력의 이해
	PUB8652	도시화와공공정책(구:도시화이론)
	PAD6006	도시행정론
	PUB7901	글로벌거버넌스 이슈들
	PUB8710	과학기술정책세미나
	PUB9991	공공정책을위한GIS및공간분석
	PUB7800	공공재정 세미나
PUB8015	고급행정계량분석	

[별첨 2]

제 10조 4항 (박사학위 종합시험의 교과목 영역구분)

구분	학정번호	과목명
제 1영역 (행정이론)	PUB7710	거버넌스 실증연구세미나
	PUB8703	관료제이론
	PUB8707	국가경영론
	PUB7730	국정관리와 대통령학
	PUB8709	비교발전행정론
	PUB8705	비교제도분석론
	PUB6004	제도주의 국가분석
	PUB7709	한국행정론
	PUB8109	행정과 민주적책무성
	PUB6103	행정이론
	PUB8901	행정이론 세미나
	PUB8101	행정학세미나
제 2영역 (조직 및 인사행정)	PUB7103	공공관리론
	PUB7820	비영리조직세미나
	PUB8207	인사정책세미나
	PUB6201	인사행정론
	PUB7004	정부성과론
	PUB7715	제도주의 조직분석
	PUB8111	조직론세미나
	PUB8142	조직실증연구
	PUB6101	조직이론
	PUB7101	조직행태론
제 3영역 (재무행정)	PUB7800	공공재정 세미나
	PUB7003	신제도주의경제학(구:합리적선택과신제도주의)
	PUB6301	재무행정론
	PUB8326	재정분석론
	PUB8322	정부예산론세미나
	PUB7705	정부와 기업
	PUB7301	지방재정론
제 4영역 (정책학)	PUB8707	국가경영론
	PUB7551	문화정책론
	PUB7531	비교정책론
	PUB7403	전자정부론
	PUB7401	정보체계론

	PUB7713	정부규제론
	PUB7810	정책관리론
	PUB8502	정책문제세미나
	PUB8504	정책분석평가론
	PUB8534	정책사례
	PUB8533	정책집행론
	PUB6509	정책형성론
	PUB7716	행정수단론
	PUB7001	행정학방법론
제 5영역 (도시 및 지방행정)	PUB9991	공공정책을위한GIS및공간분석
	FB451	도시행정론
	FB451	도시행정론세미나
	PUB8652	도시화와공공정책(구:도시화이론)
	FB457	정부간관계론
	PUB7712	지방복지론
	PUB8654	지방행정과 공동체
	PUB7606	지방행정론
	PUB8653	지방행정론 세미나
	FB391	지역개발론
제 6영역 (기능별 분야연구)	PUB8710	과학기술정책세미나
	PUB8103	과학,기술,혁신과 정책
	PUB7901	글로벌거버넌스 이슈들
	PUB6302	민관협력의 이해
	PUB7711	복지행정론
	PUB8104	비교산업정책론
	PUB7902	예술행정
	PUB9102	정책문제해결연습
	PUB6005	통상정책론
	PUB8102	혁신과 정책
	PUB3122	환경정책론
	PUB8108	THE POLICIES OF YOUTH AND OLD AGE IN MODERN KOREA